

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번호

272

제출년월일 : 1994. 12. 19

제 출 자 : 사 하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부산화력발전소의 지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(감천1, 2동)에 대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목적(안 제1조) :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
- 지원사업(안 제2조) : “지원사업”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(감천1, 2동)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함.
- 세입(안 제3조) : 세입은 부산화력발전소에서 매년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하고, 세출은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함.
- 이월사용(안 제4조) : 당해년도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함.
- 준용(안 제5조) :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름.
- 시행규칙(안 제6조) :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.

3. 관련법규

-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관한법률 제11조
- 지방재정법 제5조2항

부산직할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(이하 “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사하구 지원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지원사업”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.

제 3 조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.

제 4 조(이월사용)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 5 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제 6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